

신청인 제출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 1부 2.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3.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감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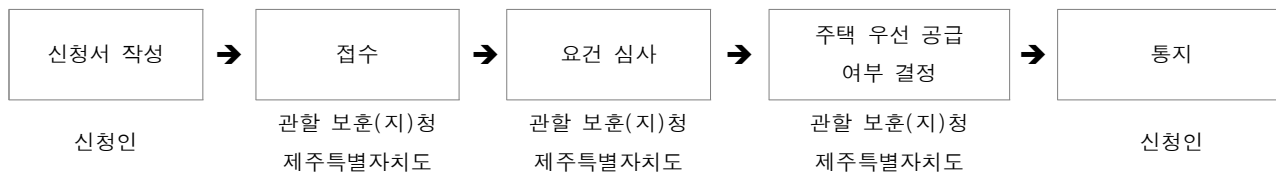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 및 제68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가구원이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